

머 리 말

우리나라는 늦어도 2005년 2월이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3층노후 소득보장체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종업원의 안정적인 수급권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 크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실정과 여건에 부합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를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감독여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과 더불어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그리고 규제감독의 중심에 서 있는 수탁기관의 규제감독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먼저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개관한 연후에, 퇴직연금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둘러싼 선진국의 최근 추이와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특징과 수탁기관(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의 정립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7월

보 험 개 발 원
원장대행 전무이사 김 창 수